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연구 -

2015. 6. 15.



법령정보정책관실
법제교육과

1. 연수목적

- 경제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선진국의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연구
- 규제선진국 영국의 One-in, One-out 제도, 강화된 One-in, Two-out 제도 등 규제개선 시스템 운영 현황조사를 통해 규제법령 정비 및 법제업무 담당자의 규제개혁 관련 전문성을 제고
- 경제혁신은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이 체계적으로 보호되는 환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권·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국제 활동에 대해 연구

2. 연수단 및 주요 일정

- 연수 국가 : 영국, 스위스
- 연수단
 -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41명
 - 법제처 인솔자 4명
 - 단 장 : 최영찬 법제관
 - 실무자 : 안은경 서기관, 강종훈 주무관, 문병주 주무관
- 방문 기관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소속 규제개혁추진단(Better Regulation Executive)
 - 영국 하원 규제개혁위원회(Regulatory Reform Committee)

-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연수 일정 : 2015. 5. 12.(화) ~ 2015. 5. 19.(화) / 6박 8일

일자	주요 일정	참석자
5. 12. (화)	출국(인천→런던)	연수단 전체
5. 13. (수)	규제개혁추진단 방문	연수단장 외 6명
	규제개혁 추진단 방문결과 토론	연수단 전체
5. 14. (목)	(하원)규제개혁위원회 방문	법제처 안은경 서기관 외 14명
	개발규제 완화, 민자유치 대표 지역 방문	규제개혁위원회 방문자 제외한 연수단 30명
5. 15. (금)	영국 기관방문 결과 브리핑 및 토론	연수단 전체
5. 18. (월)	스위스 지적재산권기구 방문	연수단 전체
5. 19.(화)	귀국(파리→인천)	연수단 전체

3. 주요 성과

- 영국 정부의 규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DBIS) 산하 규제개혁추진단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 담당자 면담
- 영국 의회(하원) 산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규제 개혁위원회(Regulatory Reform Committee, RRC) 전문위원 면담
- 세계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수석 정보담당관 브리핑

2 규제개혁추진단(Better Regulation Executive) 방문

1.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일시 : 2015. 5. 13.(수)
- 장소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DBIS) 회의실

□ 참석자

- (면담대상) Thomas Brooks(Clerk), DBIS, Better Regulation Executive 소속
- (연수단) 최영찬 연수단장 외 6명

□ 방문 주제

- 영국 규제개혁 담당기관 구성 및 업무분장 방식
- 규제개혁추진단(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의 조직, 인원 및 주요역할
- One-in, One-out을 확대한 One-in, Two-out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성과
- 규제개혁을 위한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방식
- 규제비용 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계량화의 방식
- 국민제안 규제완화제도(Red Tape Challenge, RTC)의 운영방식 및 성과

2. 기관 개요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DBIS)의 구성 및 역할

- (조직 연혁) 2009년 6월, 부처간 통합(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와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을 통해 신설
- (부처 위상) 영국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기업, 숙련된 인력, 혁신, 과학·연구분야 등을 통합적으로 결합한 국가혁신과 성장 전담 부처
- (주요 임무) 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향상 및 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② 기업의 활동, 경제 및 시장, 지적재산, 기술 교육 등 경제성장 기반 정책
- (핵심가치) 예산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용과 국가혁신 역량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발전 전략

※ 2012년 7월 지속적 발전전략(Continuous Improvement Strategy) 발표 : 최우선 정책에 중점, 공동의 목적 달성과 시너지 극대화, 추진상의 권한 위임을 핵심가치로 선정

영국 정부의 구성

- 영국정부(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는 총리가 각료를 임명하여 정부를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
- 총리는 하원 내 다수당의 지지로 선출
- 내각은 총리가 임명한 20여명의 장관으로 구성

※ 2015년 5월 현재 24개의 장관급 부처, 22개의 비장관급 부처(Non Ministerial department)로 구성되며 300개 이상의 집행기관(Agencies)과 공공기관(Other public bodies)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집행

□ 규제개혁추진단(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의 조직, 인원 및 주요 역할

- (부서 위상) 기업혁신기술부(DBIS) 산하의 규제개혁업무 전담기구로 규제정책을 총괄·조정
- (구성) 3개의 팀으로 구성; 규제신문고(Red Tape Challenge)팀, 규제비용총량(One-in, Two-out)팀, 유럽규제팀
 - ※ 팀별로 해당 팀을 담당하는 차관이 각각 따로 있으며 규제개혁의 정책수립은 담당 차관의 아이디어나 팀내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각 부처에서 제출한 아이디어를 심의하여 정책으로 수립
- (인원) 5년 전에는 90명 정도로 운영하였으나, 예산감축으로 현재 약 50명 근무
- (주요 임무) ① One-in, Two-out 운영 ② Red Tape Challenge ③ 규제완화의 실질적 이행방안 확보(Focus on enforcement) ④ EU 규제 대응 ⑤ 매 6개월마다 각 부처로부터 규제개혁 실적 통보받아 신규제보고서(Statement of New Regulation)를 발간

영국 규제개혁 담당기관(정부기관)

- (개괄) 총리실 내에 규제완화소위원회(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에서 총괄, DBIS내 2개기관(BRE, BRDO)이 있고, BRDO 산하 Primary Authority를 통해 지방일선기관의 규제담당 업무와 연계
- (총리실 규제완화 소위원회) DBIS 장관이 의장, 위원은 각 부처 규제개혁담당 차관으로 구성, 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유럽규제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보고
- (규제정책위원회, Regulation Policy Committee, RPC)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로 정부에 의해 제안된 규제 개혁 방안의 영향평가
- (Better Regulation Executive, BRE) 규제개혁업무 전담기구로 규제정책을 총괄
- (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 BRDO) 규제이행 업무 전담기구로 주로 지방정부의 규제정책을 담당

3. 주요 논의 내용

□ One-in, One-out을 확대한 One-in, Two-out 제도 도입 배경 및 성과

- (도입) One-in, One-out Rule은 2011년 연합정부 구성 시 규제개혁 어젠다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규제감축과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
 - 새로운 법령이나 위임입법이 기업이나 시민사회조직에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현존 규제의 철폐를 확인한 이후에만 제안할 수 있다는 입법적 원칙
- (확대 시행) 그러나 연립정부 초기에 도입되었던 One-in, One-out 제도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내 문화개선을 통한 규제비용 감축 의지를 반영하여 2013년 One-in, Two-out 도입으로 확대

Q. One-in, Two-out의 정확한 개념은?

A. 규제비용총량제의 개념을 잘 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음. 신규규제 하나를 신설할 경우 종전 규제 2개를 감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정확한 개념은 1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하는 규제를 신설할 때 2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하는 종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에 해당

- (제도 운영방식) 모든 규제를 계량화하여 비용 감축, 모든 신규 규제 도입 시 영향분석을 하고 이를 규제정책위원회(RPC)에 제출하여 신규 규제가 초래하는 순비용(Net cost)의 타당성 검증

※ 적용제외 사항 : EU 규정, 국제규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조치, 시민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왕실에 대한 내용, 12개월 미만으로 적용되는 규정, 자동일몰이 예정된 규정, 수수료, 비용 보전 차원에서 부과되는 부담금, 정부계약, 법원의 판결, 환경세 등¹⁾

- RPC의 심사결과는 규제완화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되고, 규제완화소위원회는 신규규제에 대한 심사 수행
- One-in, Two-out 제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각료회의에서 적절한 압력을 가하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새로운 규제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회의에서 합의에 의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함.
- 규제성과 및 진행상황에 대해 매 6개월마다 BRE에서 규제개혁 보고서를 발간하여 전 부처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부처간 순위발표가 부처의 의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Q. 2015년 총선에 따라 구성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A. One-in Two-out은 종전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이었고 새정부는 5년간 백억파운드 감축(10 billion pound saving)을 목표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감축 방식에 초점을 두고 논의 진행할 것으로 예상

Q. 규제개혁에 대한 부처간 순위 결정 시 안전분야와 같이 부처 평가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대처방안은?

A. 테러, 재난구호 등의 분야는 규제개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

- (객관적인 비용 산정 방식) 각 부처는 일정한 지침에 따라 비용을 분석하되, 완전할 필요는 없고 유용한 증거에 의해 일관성 있게 비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독립적인 영향분석기구인 규제정책

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에서 평가

- 사례가 반복되어 표본(Example)이 되고, 이를 각 부처가 공유하여 객관성·신뢰성을 제고

Q.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시 재난·안전분야,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분야 등과 같이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대처 방식은?

A. 양적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질적 요소들도 비용을 산정하는 일정한 지침이 존재하기는 함. 다만, 건강과 안전과 같이 국민의 안전, 보호와 직결되는 분야는 EU의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있기 때문에 One-in, Two-out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규제개혁의 성과) ① 매 2 ~ 3년마다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규제 개혁 노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여론의 평가 호전, 각 부처의 규제관리문화가 더 적극적이고, 시민 친화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 ②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규제이행 순위가 4년 전 85위에서 30위로 상승
- ③ 기존 규제 개선이 의미있게 증가하여 종전에 규제정책위원회에서 "Not fit for purpose"로 평가했던 부적절한 규제들이 대폭 감소
- ④ 매년 약 20억파운드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영국 규제개혁의 중점 및 추진비용

- 규제비용 부담완화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 등 대기업보다 부담이 큰 소규모 기업에 집중하고 있고, 영향이 매우 큰 주요한 몇 개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는제 초점
ex. 근로자의 해고제한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많은 국민에게 영향이 큰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
- 규제추진비용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각 부처마다 이미 규제개혁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다만, 규제신문고 제도는 관련 자료수집과 검토 작업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 비용 발생

□ 규제개혁을 위한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협력 방식

-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부처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규제 주제에 따라 총리실내 각 팀에서 관련 부처를 모두 모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
 - 업체에 대해 환경, 위생 등 검사를 나갈 경우 관련 부서 합동으로 같은 날 시행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중앙정부에서 규제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지방정부는 이에 구속되지만 구체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Primary Authority 제도 운영 : 기업이 규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Primary Authority)이 단일 창구로서 그 기업과 관련된 규제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그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일종의 규제지원 원스톱 기관

□ 국민제안 규제완화제도(Red Tape Challenge, RTC)의 운영

- 기존 규제 총량을 감축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29개 주제로 구분하여 제기된 사안을 규제 폐지 또는 존속으로 결정하여 처리하는 제도(2011년 4월 도입)
- 영국 정부는 2014년까지 3,000여건의 규제를 폐지·개선함으로써 약 1조 7천억원의 기업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평가
 - 다만, 지나친 건수 위주의 규제 폐지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사라진 사례, 규제개선을 제안한 국민이나 기업 이외 다른 국민이나 기업의 종전 이익이 침해된 사례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음.

4. 기관 방문 사진



1.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일시 : 2015. 5. 14.(목)
- 장소 : 영국 하원(United Kingdom Parliament House of the Commons)

□ 참석자

- (면담대상) James Davis(Clerk), Regulatory Reform Committee
- (연수단) 법제처 법제교육과 안은경 서기관 외 14명

□ 방문 주제

- 규제개혁위원회(RRC)의 기능 및 구성
- 영국 규제개혁 법령체계의 특징
- 규제개혁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 주요 규제개혁 조치들의 RRC 심의 절차 및 내용

2. 기관 개요

□ 영국 하원 규제개혁위원회(House of Commons Regulatory Reform Committee) 구성 및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RRC)는 영국 하원 산하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상설 위원회

※ 1994년 제정된 규제완화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에 따라 설립된 규제완화위원회가 그 전신

- RRC는 2006년 제정된 “입법 및 규제개혁법령(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LRRRA)”에 의거하여 입법 개혁 명령의 초안을 검토하여 하원에 보고
- 14명의 하원 의원들로 위원회 구성

영국 규제개혁 법령의 연혁

- 1994년 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DCOA) 제정 : 영국 규제개혁에 관한 최초의 기본법제
- 1997년 집권한 노동당 Tony Blair 정부, 규제개혁의 정책방향을 “Better Regulation”으로 설정, 총리실 산하에 규제선진화 태스크포스(Better Regulation Task Force, BRTF) 구성
- 1999년 BRTF의 논의를 중심으로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 2001년 Regulatory Reform Act(RRA) 제정
 - 2005년 BRE는 RRA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보고서를 발표, 정부와 의회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 제정 논의
- 2006년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LRRA) 제정

3. 주요 논의 내용

□ 영국 규제개혁 법령체계의 특징

- 영국의 법체계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Act of Parliament)과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부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구분
 - 법률은 Primary Legislation, 행정입법은 Delegated Legislation 또는 Secondary Legislation으로 지칭
 - 정부가 제정하는 위임입법에는 Statutory Instruments(SI), Special Procedure Orders 등이 있으며, 각종 Regulations, Rules, Orders 등이 포함

Q.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은 국회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영국의 Secondary Legislation은 행정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는지?

A. 행정입법이라 하더라도 행정부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제출(단순 제출, 승인의결, 거부결 등을 말함)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함. 영국의 법률 중에는 의회입법(Primary Legislation)으로 수권을 준 경우, 행정입법(Secondary Legislation)의 개정(의회 단순 제출, 승인의결, 거부결 등을 거친 행정입법을 말함)을 통해 Primary Legislation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음. 이는 의회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영국 법제의 특유한 제도에 해당

- 2006년에 제정된 입법 및 규제개혁법(LRRA)도 주무 장관이 상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특정 규제에 관한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개혁명령(Regulatory Reform Order, RRO)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규제는 반드시 법률이나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행정입법은 정부 내 협의와 자체심사를 거쳐 의회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 Statutory Instruments Act(1946년 제정) : 행정입법의 정의 및 공포 절차 규정

※ SI Act는 특히 공포 의무 강조, 행정부가 행정규제 등의 행정입법을 신설할 경우 반드시 그 내용과 시행일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공포되지 아니한 행정입법은 정상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규정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2006년 제정) :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각종 규제를 제정할 경우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 및 절차 규정

- Code of Practice : 정부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총리실에서 정한 실무규칙

□ 입법 및 규제개혁법(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LRRRA)의 제정 및 주요 내용

○ (연혁) 종전의 규제완화법(Deregulation and Contracting out Act, DCOA)과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 RRA)을 계승한 규제개혁기본법

○ (특징) 각 부처 장관에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개정 없이도 규제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제개혁 권한 부여(SI ACT에 따라 의회 제출과 공포 절차가 필요)

※ 영국은 정부와 의회의 관계와 관련하여 하원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회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관행이 있음. 하원 다수당이 의회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나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 법률의 효력을 변경하는 명령을 제정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나 그 내용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²⁾

- (법 제정의 목적) 입법이나 규제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부담을 감축하고 규제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유럽공동체 규약과 관련된 법 해석 원칙을 정하는 것임.³⁾
- (조문 구성) Part 1(명령제정권, Ordering-making Powers), Part 2(규제기관, Regulators), Part 3(유럽공동체 관련 법률, Legislation Relating to the EC), Part 4(보칙 및 부칙, Supplementary and General)

참고자료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의 주요내용 (p 37)

- (규제개혁명령 제정절차) 규제개혁 명령은 반드시 행정입법(Statutory Instruments, SI)으로 제정하여야 하며 공공협의(Consultation)를 거친 후,
 - 행정명령 초안(Draft Order; 법령안이 아닌 개정요청안에 해당)과 입법취지 설명서(Explanatory Document), 자문결과(Consulting Resepense) 등을 첨부하여 영국 하원 규제개혁위원회(House of Commons Regulatory Reform Committee)에 제출

2) 강은봉,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012 동아대학교 대학원

3)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Chapter 51(서문)

An ACT to enable provision to be made for the purpose of removing or reducing burdens resulting from legislation and promoting regulatory principles; to make provision about the exercise of regulatory functions; to make provision about the interpretation of legislation relating to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 European Economic Area; to make provision relating to section 2(2)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and for connected purposes[8th November 2006]

- RRC는 검토결과를 하원에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절차 진행
 - ※ RRC는 행정명령 초안(Draft Order)을 하원에 회부할지, 거부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며 RRC의 논의결과를 하원은 대부분 논의 없이 수용, 이 과정에서 RRC는 해당 사안이 빠른 규제개혁 절차(Fast Track)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정상적인 의회심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

○ (규제개혁명령에 대한 의회의 심의) 본회의 심사는 단순제출절차(Laid before Parliament), 승인의결절차(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거부의결절차(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등으로 구분

① 단순제출절차(Laid before Parliament) : 의회 제정 법률(Primary Legislation)에서 별도의 의회 심사 절차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제출만을 요구한 경우, 해당 행정입법(Secondary Legislation)은 SI Act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면 입법절차 완료

※ 행정입법의 성격에 따라서는 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Non Parliamentary Instrument)도 존재

② 승인의결절차(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 상·하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입법 심사절차로 세가지 경우 상정 가능

i) 행정부가 행정명령 초안(Draft Order)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ii) 정부가 제출한 행정입법(Secondary Legislation)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iii) 정부가 제정한 행정입법(Secondary Legislation)이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가 제정한 상위 법률(Primary Legislation)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거부의결절차(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 행정명령 초안(Draft Order)이 의회에 제출되어 4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명시적인 거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심사절차

※ 행정명령 초안에 대해 의회의 명시적인 거부가 있을 경우 입법안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와 행정입법(Secondary Legislation)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40일 이내에 무효화 동의안이 발의되어 통과되면 입법이 무효화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주요 규제개혁 조치들의 RRC 심의 절차 및 내용

○ RRC에서 검토하여 Fast Track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40일 만에 모든 행정입법 절차가 완료, 요컨대 RRC는 해당 사안이 Fast Track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검토의 초점을 맞추게 되고 RRC의 결정을 하원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다수

※ 통상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위하여 법안을 제출하여 의회를 통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6 ~ 7개월

○ RRC는 정부에서 보내온 문서(개정대상 행정입법의 원안, Draft Order, 컨설팅 결과 문서) 등을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토,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i)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ii) 행정법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보호장치가 없어지지 않는지

- iii) 과연 다른 방법의 개선책은 없는지
- iv) 행정명령 초안(Draft Order)에 대한 자문(Consultation)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v) 하원의 위원들에게 설명하기가 용이한지

Q. 재난·안전 분야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행정입법 심사·검토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 내용을 심사하는지?

A. 대표적으로 소방법과 관련된 규제완화 사례가 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음. 소방, 안전, 식품안전 등의 분야는 전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Fast Track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슈(Big Issue)에 해당하여 RRC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분야에 규제개혁을 하는 경우 그 입법안은 상위 법률(Primary Legislation)이든 행정입법(Secondary Legislation)이든 의회의 정상적인 논의 절차에 따라 입법을 진행해야 함.

- RRC는 행정명령 초안(Draft order)이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평가하여 보고서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
- 상원은 규제개혁을 위한 모든 행정입법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며, 하원 본회의는 RRC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
 - ※ RRC의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승인 권고를 했을 경우에는 하원 본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 RRC가 다수결로 승인권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승인 여부 결정, 정부가 RRC의 권고에 불복하여 승인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 결정⁴⁾

4) 강은봉,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012 동아대학교 대학원

-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에 관하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 상응하여 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도 강력한 편이나,
 - 매년 3천여건에 달하는 행정입법을 의회가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고, 양원 본회의가 행하는 각종 심사 역시 형식적 절차에 머무른다는 지적 제기⁵⁾
 - 집권여당으로서는 정부가 발의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 의석수가 열세인 야당도 적극적인 심사에 한계
 - 영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에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여러 상임위원회를 두고 연간 1천여 건에 이르는 행정규제와 행정입법을 심사, 특히 “승인의결절차(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가 적용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강력한 통제 이루어지고 있음.
 - RRC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행정명령 초안(Draft order)을 심사함은 물론, 총리실·BRE·재무부 등이 제기하는 각종 규제개혁 의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

4. 기관 방문 사진



5) 안동인,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 행정법연구 통권 24호

1. 방문 개요

□ 일시/장소

○ 일시 : 2015. 5. 18.(월)

○ 장소 :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회의실

※ 해당일에 WIPO 국제회의 개최 관계로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회의실에서 브리핑 개최

□ 참석자

○ (브리핑) Cathy Jewell, WIPO Senior Information Officer, Communication Division

○ (연수단) 연수단원 전체

□ 방문 주제

○ WIPO의 연혁 및 역사, 조직 구성, 주요 임무, 전략목표

○ 세계 지적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WIPO의 활동

○ 지적재산권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WIPO 아카데미

○ 글로벌 전략

- 특허협력조약

- 마드리드 시스템

- 헤이그 시스템

2. 기관 개요

□ WIPO의 연혁 및 역사,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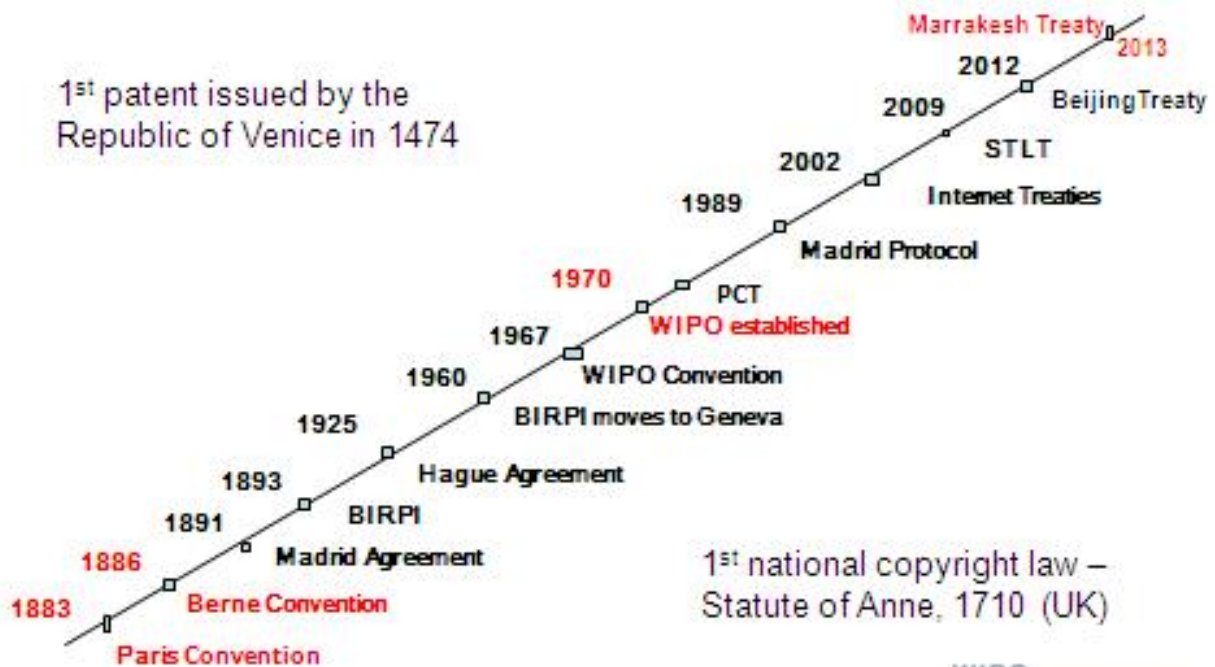
- 연혁 : 세계지적재산권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구
- 전신은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파리협약(1883년)*과 저작권을 다루는 베른협약(1886년)**의 합동사무국인 BIRPI(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berty and Artistic Works

<주요 연혁 :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조약 체결 및 WIPO 설립>

Historical Milestones : 1883 to 2014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조약

- WIPO 설립협약(1967. 7. 14. 스톡홀름)
 - 계약당사자 각국의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창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걸쳐 지식재산의 보호를 촉진함을 천명
 - 베른협약(1886. 9. 9. 서명된 어문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협약)과 파리협약(1883. 3. 20. 서명된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계승
 - 지식재산권의 종류 명시
 - ✓ 어문·예술 및 과학 저작물
 - ✓ 공연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 ✓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 ✓ 과학적 발견
 - ✓ 산업의장
 - ✓ 상표, 서비스표시 및 상업적 명칭 및 호칭
 - ✓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
 - ✓ 그 밖에 산업·과학·어문 또는 예술 분야의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 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1970. 6. 19. 워싱턴)
 -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 발명에 관한 문서상의 기술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
 - 개발도상국가의 특별한 필요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 습득을 위한 정보 제공
 - 발명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마련한 국내 또는 지역적 법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 채택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1989. 6. 27.)
 - WIPO 국제사무국 등록을 통한 표장에 대한 보호

- 주요 미션 : 모든 정부, 기업, 개인이 창조와 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지적재산권의 잠재적인 효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 WIPO는 국제법 및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의 국제적 보호 시스템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이끄는 지적재산권의 개발을 촉진
 -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의 법제 간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기술적 측면의 원조 실시
- 구성
 - 188개 가입 국가와 350개국의 옵저버기관으로 구성
 - 직원 : 118개국으로부터 파견된 1,296명
 - 관리 조약 수 : 26개
 - 주요 의사결정은 2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General Assembly), 당사국회의(Conference),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를 통해 이루어짐
 - 상설 위원회(Standing Committees) : 개별 이슈에 대해 합치된 의견을 생성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균형 있고, 신뢰할만하며, 효과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비용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허권 관련 SCP
 - 저작권 관련 SCCR
 - 상표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관련 SCT

3. 주요 논의 내용

□ 세계 지적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WIPO의 활동

- WIPO는 이해관계자들과 지적재산권 발전을 위한 범용(凡庸)화된 프로그램(tools), 서비스, 플랫폼, 표준(standards)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기구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
- 주요 활동 내용
 - 지적재산권 담당기구의 현대화(modernizing)를 위한 기술적 지원
 - 기술혁신지원센터(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Center)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향상
 - 지적재산권 기구들간의 데이터 공유(e-data exchange)를 위한 일반적 플랫폼 구성
 - 범용(凡庸)화된 프로그램(tools) 개발(국제분류 기준 마련)
 - 표준 및 기술적 합의(technical agreement)
 - 데이터베이스 구축(Global Brand DB 등)
 - 특허권 검사(Patent examination)를 위한 국제적 공조 서비스 제공, 특허권 정보제공 서비스(특허권의 법률정보 제공 포함)
 -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포럼 개최(Global Symposium of IP Authorities)

□ 지적재산권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WIPO 아카데미

- 개발도상국가의 지식재산권 분야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WIPO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유관 교육기관 등과 결연을 맺어 대면교육 (face-to-face traninig), 인터넷을 통한 원격학습(distance learning) 센터 등을 이용해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 국제적이고 학제적(여러분야가 관련된) 접근방식(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y approach to IP education)으로 운영
- WIPO 가입 이해당사국과 특허권 관련자들의 국제적 네트워킹을 통해 인간 중심의 지적재산권 역량(human IP capacity)을 향상하는 국제적 협력을 촉진

○ 주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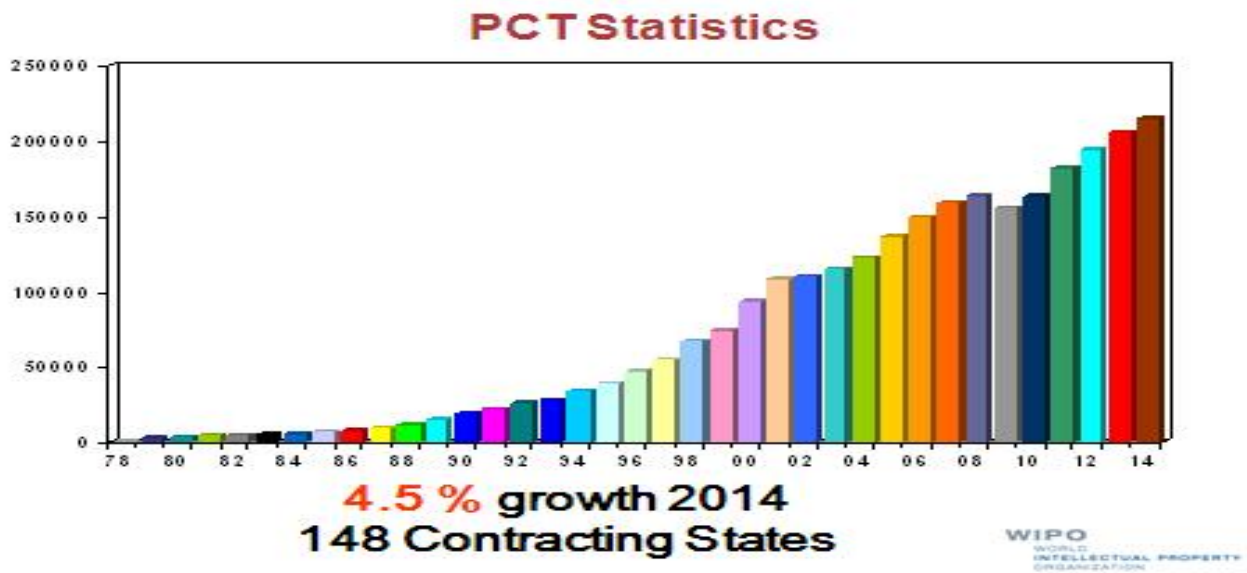
- WIPO 회원국들의 전문 역량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 대학을 위주로 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Program)
 - * 원격교육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고위자 프로그램(Executive Program)
- 여름학교 프로그램(Summer Schools Program)
- WIPO 본부 인턴십

□ 글로벌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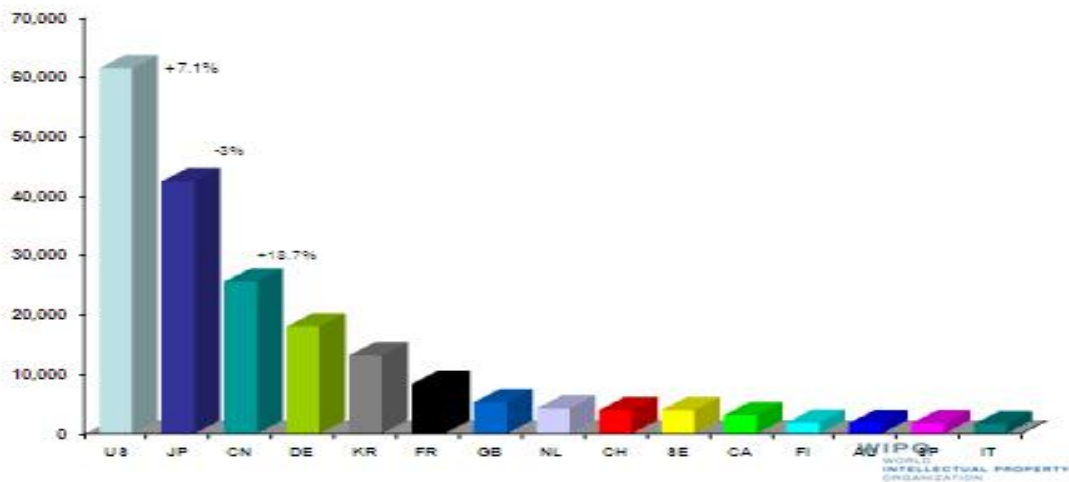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1970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제적인 특허 법률 조약, 1978년 1월 24일 발효 및 시행
- 18개 체약당사자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1,248개의 체약당사자로 확대되면서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음

- PCT를 통해 국제출원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개별국 진입을 위한 비용집행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한 사업성과 시장성 등을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



- 2014년도 148개 가입국의 PCT 국제출원 수는 214,500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



- 우리나라는 PCT 출원 순위 5위에 해당(1위는 미국, 2위는 일본, 3위는 중국, 4위는 독일)

PCT Applications 2014 - Top 10 Countries



214,500 international applications in 2014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대한민국은 1984년 8월 10일에 가입, 2014년 PCT국제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1만 3,151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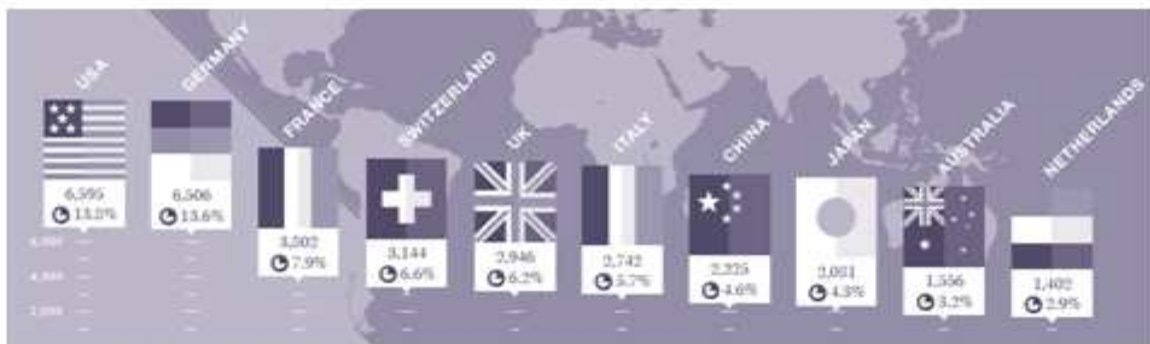
※ 가입 첫해에 10건에 불과했던 출원건수가 1300백배 이상 증가, PCT 가입 이후 지난 30년간 연평균 24.1% 증가

○ 마드리드 시스템

-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
-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설립된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

-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Marks)로서 1898년 6월 27일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해당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부터 시행

MADRID Applications 2014 - Top 10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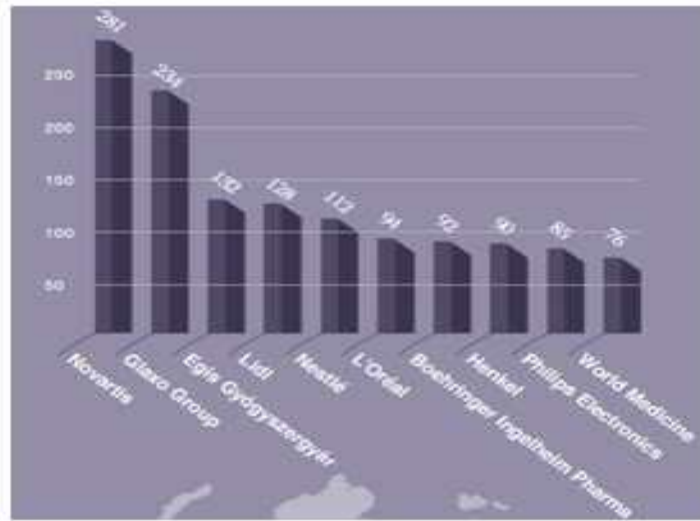


Record 47,885 applications in 2014
2.3% growth
95 contracting parties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2014년 마드리드 시스템에 등록된 상표는 95개 회원국(대한민국은 2003년 4월 가입), 47,885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 본국관청에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로 해당 표장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국제출원서를 본국 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제출하면 WIPO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재하고, 국제공보에 공고한 후 지정국 관청에 공지

Top 10 Companies - MADRID Applicants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 10대 상표등록 또는 등록출원 기업은 Novartis, Glaxo Group 등의 순

Top 5 Classes



Number of classes specified in international registrations and growth rate 2013-14.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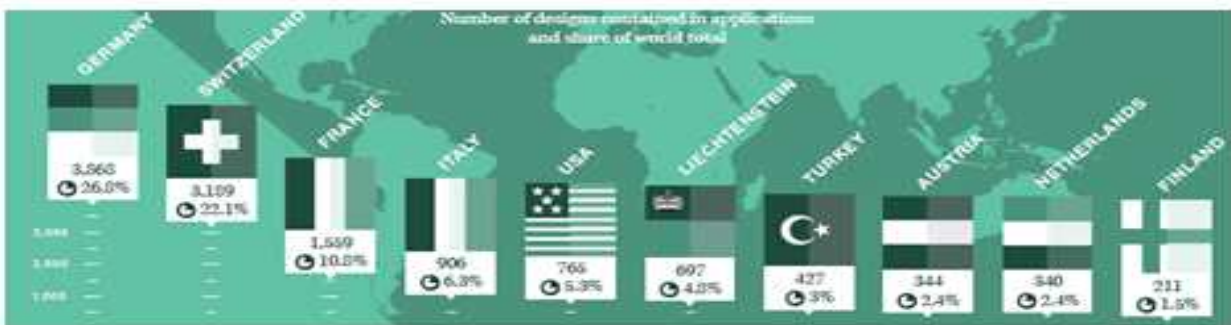
- 상표등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5대 분야는 컴퓨터 및 전자기기, 경영서비스, 기술서비스, 의약품, 의류에 해당

○ 헤이그 시스템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위한 국제디자인 출원시스템으로, 디자인 권리자가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고, 하나의 통화(스위스 프랑)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다수의 계약당사자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
- 1960년 개정협정과 19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당사자 국가의 자연인 또는 기업, 정부간 기구(EU 등)의 관련자 등은 디자인의 국제출원을 할 수 있고, 이 출원에서 해당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를 지정 가능

※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일 제네바 개정협정(1999 ACT)에 가입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

The Hague System - Top 10 Countries in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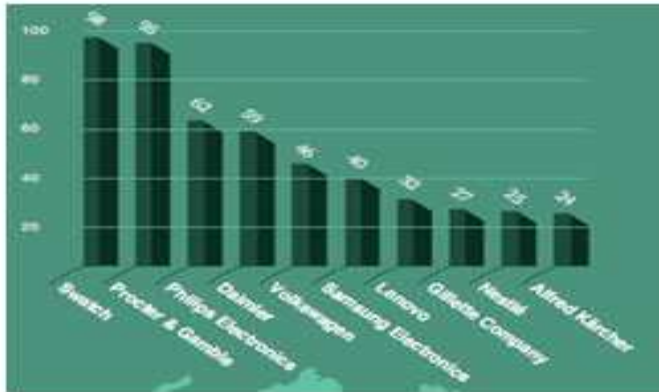


14,441 designs in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s
9.6% growth
64 contracting states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64개 가입국의 국제디자인 출원 건수는 14,441건으로 전년대비 9.6% 증가, 출원 순위 상위국가는 1위 독일, 2위 스위스, 3위 프랑스, 4위 이탈리아, 5위 미국의 순

Top 10 HAGUE Applicants



Number of Hague Applications filed in 2014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2014년도에 디자인 출원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기업은 Swatch, Procter & Gamble, Phillips Electronic 등의 순

Top 5 Classes



Number of registrations and growth rate 2013-14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2013년도 2014년도 디자인 출원 상위 5대 분야는 시계, 컨테이너, 교통수단, 가구, 음향시설 등

4. 기관 방문 사진



□ (영국) 규제개혁추진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방문 결과 및 시사점

영국 규제개혁 사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시도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판단

- ① 영국에서 규제개혁 총괄기구인 BRE와 규제정책 집행 총괄 부서인 BRDO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규제개혁 추진 총괄부서와 집행 총괄부서를 분리하고 양자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추진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전 분야에 걸쳐 일시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보다, 영향이 매우 큰 본질적이고 중요한 규제의 전면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인식을 우호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
- ② DBIS 산하 2개 기관(BRE, BRDO)과 하원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규제개혁을 이끄는 것처럼,
 - 정부 수준의 추진체계와 의회 수준의 규제 검토 체계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규제비용 검증기관(영국의 경우 RPC)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례가 반복되어 표본이 되고, 이를 부처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 : 정부부처의 규제 신설·폐지 제안을 검증하는 독립적인 기구

-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개혁은 빠른 절차로 진행(Fast Track) 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Fast Track이 절적한지, Fast Track을 거부하고 심도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아닌지 등을 독립적·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정부 또는 국회의 상설위원회(영국의 경우 하원의 상설위원회인 RRC)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③ 영국의 규제개혁기구가 BRDO를 통해 Primary Authority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규제개혁은 우리나라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계류중, 2014년 8월 27일 정부 제출)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방규제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규제 개혁을 검토하고 있어 더욱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됨.

④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부처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해결에 가장 집중하며, 기업이 같은 사례로 여러 부처에 대응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부터 개혁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민관합동규제개혁장관회의와 같이 관련부처 합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재확인시켜줌.

- 이를 위해서는 규제총괄기관이 핵심역량을 가지고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 등을 정착할 필요가 있음.

⑤ 국민제안 규제완화제도(Red Tape Challenge, RTC)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제도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운영과 같은 맥락의 제도에 해당

- 국민이나 기업의 건의로 진행되는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폐지로 침해되는 종전의 이익이 없는지, 특히 제안자가 아닌 국민이나 기업의 기득권 침해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⑥ 영국의 법령체계와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상이하어 정부 하위 법령으로 국회입법이 개정되는 강력한 입법추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의회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기타의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

⑦ (아쉬운 점) 우리나라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의 경우, 사실상 규제비용 분석이 논의의 핵심에 해당함.

- 과연 객관적인 규제비용분석이 가능한지, 규제비용분석 및 검증을 담당할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하는지, 규제비용분석을 고의나 과실로 부당하게 할 경우 대처방안은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 영국 총선 등의 영향으로 규제비용분석을 담당하는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에 방문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함

□ (스위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방문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활동 수준을 검토해본 결과 특허와 관련된 PCT는 세계 5위권으로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표나 디자인의 출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여나 활동이 보이지 않음

-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상표나 디자인 분야의 출원등록으로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법률의 구성**제1장 명령 제정권(Order-making Powers)****(1) 장관의 권한(Powers)**

- 규제 폐지 · 제정권(Power to remove or reduce burdens)
- 규제 원칙의 촉진권(Power to promote regulatory principles)

(2) 명령 제정의 제한(Restriction)

- 명령 제정 요건(Preconditions)
- 명령 제정이 불가능한 분야

(3) 명령 제정 절차(Procedure)

- 공공협의(Consultation)
- 의회심사
 - 단순제출절차(Laid before Parliament)
 - 승인의결절차(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 초승인의결절차(Super 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 거부결절차(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4) 일반규정(General) : 기한계산, EU법 적용사항 등**제2장 규제기관(Regulators)****(1) 규제기능 수행의 요건(Exercise of Regulatory Functions)**

- 원칙(Principles)
- 실무규칙(Code of practice)의 제정

제3장 유럽공동체 관련 법률(Legislation Relating to the EC)

(1) EU법의 해석(Interpretation of Legislation)

(2) EU 의무의 집행(Implementation of Community Obligation)

제4장 부칙 및 보칙(Supplementary and General)

□ 규제 관련 명령제정권(Order-making Powers)

○ 각 부의 장관은 두 가지 유형의 규제개혁 명령 제정

-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제거 또는 경감⁶⁾하는 명령
 - ‘부담(burdens)’이란 재정적 비용, 행정상 불편, 효율성·생산성·수익성에 대한 장애, 형사상 처벌 또는 기타 제재⁷⁾
 - 대상이 되는 ‘법령’이란 모든 일반 공공법, 지방자치법 및 그에 부속되는 추밀원령, 명령·규칙·규제·계획·권한 등 모든 행정입법⁸⁾
- 규제의 원칙을 촉진하기 위한 명령
 - 규제의 원칙이란 투명성·책임성·비례성·일관성·집중성을 말함.⁹⁾

6) That purpose is removing or reducing any burden, or the overall burdens, resulting directly or indirectly for any person from any legislation

7) In this section "burdens" means any of the following-

(a) a Financial cost

(b) an administrative inconvenience

(c) an obstacle to efficiency, productivity or profitability

(d) a sanction, criminal or otherwise, which affects the carrying on of any lawful activity

8) In this section "Legislat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or a provision of any of the following-

(a) a public general Act or local Act(whether passed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section

(b) any Order in Council, order, rules, regulations, scheme, warrant, byelaw or other subordinate instrument made at any time under an Act referred to in paragraph (a)

9) Power to promote regulatory principles

Those principles are that-

□ 명령 제정의 제한(Restriction)

- 각 부 장관이 규제개혁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요건¹⁰⁾
 -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없이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명령의 효력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정할 경우
 - 공익과 명령의 영향을 받는 자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공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 기존의 보호를 철회하지 않을 것
 - 지속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
 - 명령이 헌법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경우

- 명령 제정이 제한되는 경우
 - 조세의 부과·폐지·변경
 - 형벌 부과 조항
 - 강제수색, 조사, 구금, 압수의 권한 신설하는 명령
 - 인권법을 수정 또는 폐지하는 명령

(a) regulatory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which is transparent, accountable, proportionate and consistent

(b) regulatory activities should be targeted only at cases in which actions is needed

10) Preconditions

Those conditions are that -

(a) the policy objective intended to be secured by the provision could not be satisfactorily secured by non legislative means

(b) the effect of the provision in proportionate to the policy objective

(c) that provision, taken as a whole, strikes a fair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interests of any person adversely affected by it

(d) the provision does not remove any necessary protection

(e) the provision does not prevent any person from continuing to exercise any right or freedom which that person might reasonably expect to continue to exercise

(f) the provision is not of constitutional significance

□ 명령 제정 절차(Procedure)

- 공공협의(Consultation), 의회에 행정명령 초안(Draft Order)과 입법 설명서(Explanatory Document) 제출
 - 공공협의 대상¹¹⁾
 - 실질적 이해관계인을 대표하는 단체
 - 명령의 제정으로 영향을 받는 법정기관
 - 웨일즈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웨일즈 의회
 -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잉글랜드 ·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의 법률위원회
 - 그 밖의 적절한 이해관계자
 - 의회심사
 - 단순제출절차(Laid before Parliament)
 - 승인의결절차(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 초승인의결절차(Super 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 ※ 초승인의결절차란 각 부의 장관이 의회 제출한 법령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의회의 권고내용을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할 것인지 당초 제출한 내용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 후 입법절차를 진행

11) If a Minister proposes to make an order under this part he must-

- (a) consult such organizations as appear to him to be representative of interests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 proposals
- (b) where the proposals relate to the functions of one or more statutory bodies, consult those bodies, or persons appearing to him to be representative of those bodies
- (c) consult the Assembly where the proposals, so far as applying in or as regards Wales, relate to any matter in relation to which the Assembly exercises functions (and where the Assembly's agreement is not required under section 11)
- (d) in such cases as he considers appropriate, consult the Law Commission, the Scottish Law Commission or the Northern Ireland Law Commission
- (e) consult such other persons as he consi

- 거부의결절차(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보고서 본문에서 설명(의회의 통제절차, p. 16)

□ 규제기관(Regulators)

○ 규제의 원칙

- 투명성, 책임성, 비례성, 일관성, 집중성

○ 규제 실무규칙(Code of practice) 제정

- 각 부 장관은 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무규칙을 제정하고 관리

※ 규제기관이 실무규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 소송에서 규제 위반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

○ 내각 규제개혁 담당 기구

- Reducing Regulation sub-committee : 총리실 규제완화소위원회

※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 규제개혁 정책을 자문하는 독립기구 Better Regulation Task Force(BRTF) 설치(1997)

- Regulatory Policy Committee : 내각 차원의 규제개혁 자문기구

- (개편) 2009년 정부기관으로 출범한 후 2012년에 독립적인 비정부 부처 자문 공공기관으로 재편
- (구성) 8인의 위원과 사무처(15명의 정책 담당 정부공무원과 경제분석가)로 구성

(Regulatory Policy Committee 계속)

- (기능) 정부부처의 규제 신설·폐지 제안을 검증하는 독립적인 기구
 - 규제영향평가 검증 : 규제신설과 폐지 제안에 대한 분석과 증거의 품질에 대해 전문적, 독립적, 중립적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부 부처의 규제 편향성 제거
 - OITO 적용 규제에 대해 연간균등기업순비용 추계와 관련된 분석에 대해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
 - RPC는 단순한 규제비용 검증보다는 정부가 합리적인 규제안 마련을 위해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수행
 - ※ RPC는 규제정책 목표 설정과 정책수단 결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권한을 존중하여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음
 - 비규제 대안 발굴, 규제대안 마련을 위한 숙고, 충분한 증거 제시, 신뢰성 있는 규제비용편인 추계 제공

- Better Regulation Executive : 규제개혁 실무 총괄기관

- 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 : 규제정책 집행 총괄 부서

- (종전 기구) Local Better Regulation Office
 - 일종의 공공기관으로 규제정책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의제를 조율하고 지방정부의 규제집행 매뉴얼을 제공하는 역할

(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 계속)

- (개편) 2012년 공기업인 Local Better Regulation Office(LBRO)를 정부기관인 BRDO로 개편,
 -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DBIS)의 산하기관으로 편성
- (기능) 행정편의적인 규제(Red Tape)를 줄이고 국민을 보호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 추진
 - 통합적 규제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집행과 조사에 대해 정부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규제자와 정책입안자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규제를 집행하도록 하는 기능 수행
 - 여러 기업에 대해 중복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제안을 반영하는데 초점
 - 기업단체와 기업참고패널(business reference panel)을 구성하여 기업, BRDO, 정부규제기관 간 3자 회의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